

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
및 운영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별 첨
4. 검 토 의 견 : 별 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8년 10월 2일

행 정 자 치 위 원 회

전문위원 박 춘 용

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

본 조례 안은 2008년 9월 11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9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시민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및 민속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한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).
- 나.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의 운영 및 운영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.
- 다.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).
- 라.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의 사용허가, 사용허가 취소, 사용료 등에 관하여 정함(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).

3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 안은

전통문화 보급과 계승 발전을 위하여 건립중인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의

사용허가, 공연장 사용료 등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 본문 14조와 부칙으로 축조되어 있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조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제정 목적과 정의 등을, 제4조부터 제13조에서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4조에는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○ 본 조례 안 검토결과

전수회관과 웃다리농악 전수교육관을 동종의 무형문화재 조례로 통합 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운영목적 달성과 시설물 보호를 위한 사용허가,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위한 공연장 사용료 감면, 민간위탁 필요시 근거 및 수탁자에 대한 지원과 의무조항 등 필요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